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3나39206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재판경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3나39206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8. 23 선고 2020가단1630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재

담당변호사 황성준

피고, 피항소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추현영

변론종결 2024. 3. 21.

판결선고 2024. 4. 4.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8. 23. 선고 2020가단16300 판결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99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쪽 아래에서 제5행의 “갑 2, 3, 을 1의 1내지 8”을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1 내지 8의 각 기재”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10행부터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에 미치지 못하는 계란을 납품하였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원고가 주장하는 후장기 방식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란 대금의 구체적 액수 및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계란의 양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를 확인할 자료는 전혀 없다. 나아가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가지고 있던 계란이 일부 부패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이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계란인지 여부, 피고가 계란을 공급할 때부터 위 계란이 부패한 상태였는지 여부 및 원고 측의 보관상 과실 등이 개입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자료도 전혀 없다. 따라서 증인 G의 증언을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제1심판결 제3쪽 아래에서 제5행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를 “소장부분 송달 다음 날인 2021. 6.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8. 23.까지”로 고친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장용범, 판사 김민순, 판사 이슬아